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허10557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소송복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박대진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6. 7. 16.

판 결 선 고 2026.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5. 9. 18. 2024당155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2022. 9. 14. / 2023. 3. 30. / 1210395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압력솥용 클램프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1)]

1) 선행디자인 1(갑 제7호증)

'압력솥용 클램프'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 사진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13호증)

2020. 6. 24. 공고된 등록특허공보(10-2125995)에 게재된 '압력솥용 클램프'에 관한 디자인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4. 5. 2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등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4당1552로 심리한 다음, 2025. 9. 18. '선행디

1) 원고가 나머지 선행디자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선행디자인 1은 원고가 2024. 5.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제공받은 압력솥 뚜껑에서 분리된 '압력솥용 클램프'에 관한 것이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D 등에 납품·판매한 압력솥 제품에 장착되어 있던 클램프와 같은 디자인이다. 따라서 선행디자인 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도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선행디자인 1의 공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등 참조).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는 점은 디자인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인 압력솥용 클램프의 각 구성 부분은 우측 그림과 같다.

나) 갑 제5, 6, 8 내지 12, 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E'을 운영하였다. D 대표이사 F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D이 2019. 4.경부터 2022. 8.경까지 피고로부터 '솥밥대통령' 압력솥을 납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0년과 2021년의 세금계산서에는 E이 D에 압력솥 뚜껑, 스테인리스 압력솥 등을 공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7, 15호증).

(2) D의 홈페이지 게시물에는 2019. 10. 11.경부터 2022. 5. 3.경까지 여러 음식점에 '솥밥대통령' 압력솥이 설치되거나 판매된 내역이 나타난다(갑 제6호증의4 내지 12).

(3) D은 2020년경 유튜브에서 '솥밥대통령' 압력솥을 홍보하였고, 2021. 10. 14.부터 2021. 10. 16.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2022. 6. 7.부터 2022. 6. 10.까지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관련 제품을 출품하였다(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1, 2).

(4) '솥밥대통령' 압력솥은 2019. 12.경 발간된 월간지 'INTERVIEW'와 '외식경영'에 소개되었고(갑 제17 내지 20호증), 2021. 7. 19. 네이버 블로그와 2022. 6. 24. 스포츠조선 인터넷 기사에도 게재되었다(갑 제8호증, 갑 제6호증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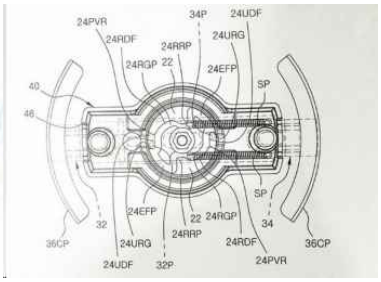
(5) 한편 모델명이 DS-1100인 '대성 오브제' 압력솥은 2020. 4. 27. 안전인증을 받았고, 다나와 상품정보에는 2020. 4. 상품등록 내역이, 쿠팡 상품 페이지에는 2022. 3. 25. 작성된 상품평이 각각 확인된다(갑 제9호증의2, 갑 제11, 12호증).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항과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피고가 D 등에 납품·판매한 압력솥 제품에 선행디자인 1과 같은 전체 형상의 클램프가 적용됨으로써 선행디자인 1이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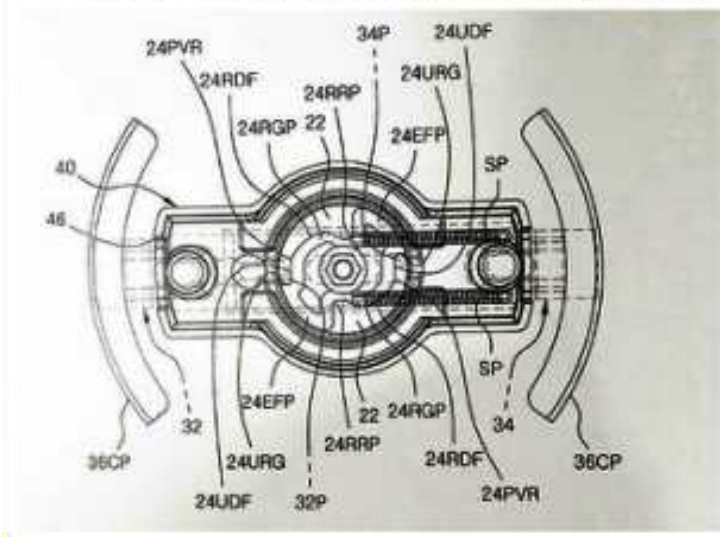
(1) 출원 전 공개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클램프의 형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연결부와 결착부의 일부만 나타날 뿐, 결합편부와 돌기편부를 포함한 클램프의 전체 형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1	갑 제6호증의2
		
갑 제6호증의3	갑 제6호증의5	갑 제6호증의6

<table>
<tr><td></td><td></td><td></td></tr>
<tr><td>갑 제6호증의7</td><td>갑 제6호증의8</td><td>갑 제6호증의9</td></tr>
<tr><td></td><td></td><td></td></tr>
<tr><td>갑 제6호증의10</td><td>갑 제6호증의11</td><td>갑 제6호증의12</td></tr>
<tr><td></td><td></td><td></td></tr>
<tr><td>갑 제9호증의2</td><td colspan="2">갑 제11호증</td></tr>
<tr><td></td><td colspan="2"></td></tr>
</table>

		
갑 제18호증의2	갑 제18호증의3	갑 제18호증의4
		
갑 제18호증의5	갑 제20호증의2	갑 제20호증의3
		
갑 제23호증		
		

(2) 원고는 2024. 10. 16. 쿠팡에서 모델명이 DS-1100인 압력솥을 구매하였고, 그 제품에는 선행디자인 1과 같은 클램프가 장착되어 있다(갑 제10호증의7, 갑 제16호증).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후 약 2년이 지나 구매한 제품이다. 동일한 모델명이 출원 전부터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부 부품의 구조와 형상이 그 기간 내내 변경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제품의 제조시기나 부품변경 이력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2018. 11. 14. 선행디자인 2의 도면을 포함한 '뚜껑 안전록커를 구비한 압력밥솥'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출원 전 쿠팡 상품상세란에도 그 도면이 게재되어 있었다(갑 제11, 13호증). 따라서 위 사후 구매품만으로 출원 전 DS-1100 제품에 선행디자인 1이 적용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11호증 20면
국내 대성정밀 특허 (안전을 생각한 2중 레버손잡이) 

(3) D 대표이사 F의 확인서에는 D이 2019. 4.경부터 2022. 8.경까지 피고로부터 '솥밥대통령' 압력솥을 납품받아 판매하였고, 2024. 5. 3. 원고에게 제공한 별첨 사진의 압력솥 뚜껑도 위 기간에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7호증). 그런데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심결이 있은 후인 2025. 9. 26. 작성되었고, 별첨 사진의 압력솥 뚜껑이 위 기간에 납품된 제품임을 확인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그 뚜껑의 구체적인 납품일자, 제품번호 및 2024. 5. 3.까지의 보관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납품명세서, 제조기록 또는 출원 전 촬영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확인서 중 별첨 사진의 압력솥 뚜껑과 그 내부 클램프가 출원 전 납품제품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 대표이사 B의 사실확인서에는 2022. 9. 12. 음식점에서 설치·사용 중인 '솥밥대통령' 압력솥을 촬영하고 업주로부터 그 압력솥의 뚜껑 1개를 제공받았으며, 첨부 3, 4는 그 뚜껑의 외형과 이를 분해한 사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2호증). 위 사실확인서는 원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6. 7. 1.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첨부 2의 촬영정보는 음식점 내부를 촬영한 첨부 1 사진의 촬영 일시만 나타낼 뿐, 첨부 3, 4의 뚜껑 및 분해 사진이 같은 날 촬영된 것인지 또는 당시 그 음식점에서 제공받은 물품을 촬영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첨부 1에 나타난 압력솥과 첨부 3, 4에 나타난 뚜껑 및 클램프가 동일한 제품에 관한 것인지도 위 사진들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더욱이 음식점 업주의 확인서, 물품 인수증 등 그 출처와 동일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실확인서 중 첨부 3, 4의 뚜껑 및 클램프가 2022. 9. 12.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받은 물품이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와 동일·유사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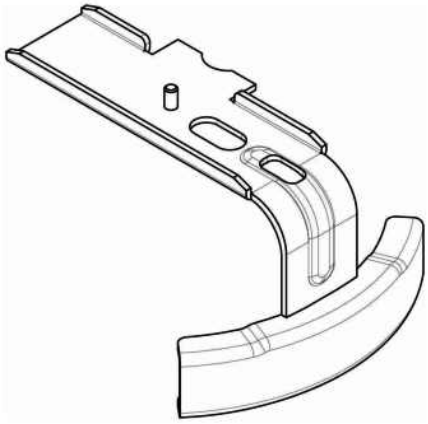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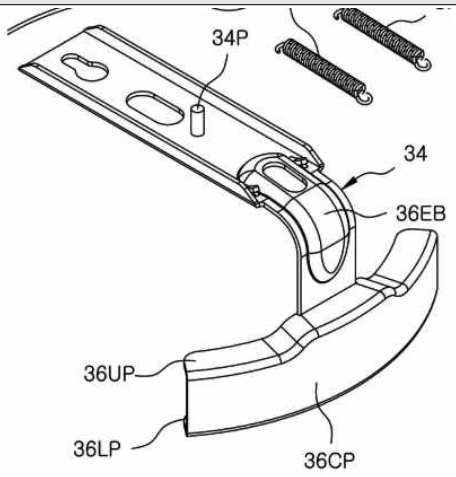
2) 구체적 판단

가)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과 선행디자인 2의 대상물품은 모두 압력솥 뚜껑에 결합되어 잠금·개폐 작동을 수행하는 부품인 '압력솥용 클램프'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나) 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주요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사시도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다.

① 결합편부, 연결부 및 결착부를 주요 구성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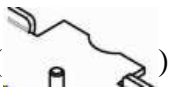
② 결합편부 상면 중앙에는 수직핀이 형성되어 있고, 양 측면의 테두리는 위로 절곡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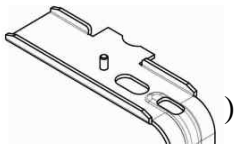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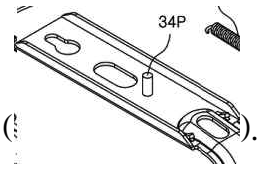
③ 연결부는 전체적으로 'ㄱ'자 형태로 절곡되어 결합편부와 결착부를 잇고, 윗면과 옆면에 걸쳐 보강부가 형성되어 있다.

④ 결착부는 'ㄷ'자형 단면을 갖는 원호상으로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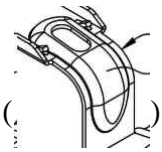
(2) 차이점

반면 양 디자인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① 결합편부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돌기편부가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에는 없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결합편부 상면에는 서로 다른 크기의 타원형 관통공 2개가 수직핀과 연결부 사이에 배치된 반면(), 선행디자인 2에는 타원형 관통공 2개와 열쇠구멍 모양의 관통공 1개가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

).

③ 연결부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강부는 폭이 좁고 길게 형성된 반면(), 선행디자인 2의 보강부는 폭이 넓고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되어 있다().

라) 판단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앞서 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할 것이다.

(1) 공통점 ① 내지 ④는 양 디자인이 모두 압력솥 뚜껑의 잠금·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클램프라는 데서 비롯된 기본 골격과 추상적 구성에 관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능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통부분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결합된 전체 외관을 함께 살핀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기편부는 결합편부 중앙의 외곽선을 바깥쪽으로

돌출시키면서 반원형의 오목부를 형성한다. 선행디자인 2에는 이에 대응하는 부분이 없어, 차이점 ①은 사시도와 평면도에서 쉽게 눈에 띄는 특징을 이룬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수직핀과 연결부 사이에 서로 나란한 타원형 관통공 2개를 배치한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수직핀의 반대편에 열쇠구멍 모양과 타원형의 관통공을 배치하고 연결부 쪽에도 큰 타원형 관통공을 둔다. 이처럼 관통공의 개수·형상·배열이 함께 달라 결합편부 상면의 시각적 구성이 뚜렷이 구별된다.

(4) 연결부의 보강부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폭이 좁고 길게 뻗은 선형으로 표현된 반면, 선행디자인 2에서는 굴곡부를 넓게 덮는 짧고 넓은 면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점 ③은 연결부의 입체감과 양감을 달리 보이게 한다.

(5) 원고는 일부 통공의 크기, 결착부의 곡률 및 가이드레일 중간 돌기편부의 차이가 압력솥 뚜껑에 설치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자 고정수단으로서의 기능적 형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사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 참조). 양 디자인 자체가 돌기편부, 관통공 및 보강부의 형상을 서로 다르게 구성하면서도 같은 잠금·개폐 기능을 수행하는 점은 그러한 대체 가능성을 보여 준다.

(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완제품과 구별되는 부품인 압력솥용 클램프이므로, 부품의 거래 시 또는 수리·교체 과정에서는 결합편부와 연결부를 포함한 전체 형상이 드러난다. 앞서 본 세 차이점은 결합편부 중앙과 상면, 연결부에 걸쳐 서로 연계되어 나타나므로, 공통되는 기본 골격에도 불구하고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 동일·유사하지 않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후102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차이점들이 압력솥용 클램프의 기능상·제조상 필요에 따른 형상 조정에 불과하여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하고, 각 구성도 작동상 필요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선택·배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를 단순히 변경·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차이점 ①(돌기편부의 유무) 관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기편부는 결합편부 중앙의 외곽선을 변화시키는 두드

러진 구성으로서, 선행디자인 2에는 이에 대응하는 형상이 없다. 위 돌기편부가 고정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가하는 것이 기능상 또는 제조상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로 인하여 결합편부의 외곽선이 달라져 선행디자인 2와 다른 시각적 인상이 형성된다.

나) 차이점 ②(관통공의 개수・위치・형상 차이) 관련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의 관통공을 단순히 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 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열쇠구멍 모양의 관통공을 없앤 다음, 두 타원형 관통공을 수직핀과 연결부 사이에 나란히 배치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삭제와 배열 변경이 기능상 또는 제조상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그로 인하여 결합편부 상면에 선행디자인 2와 다른 시각적 질서와 미감적 가치가 형성된다.

다) 차이점 ③(보강부의 폭과 길이 차이) 관련

선행디자인 2의 연결부를 넓게 덮는 짧고 넓은 보강부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폭이 좁고 길게 뻗은 선형으로 변경하면 연결부의 입체감과 양감이 달라진다. 보강부가 기능과 관련된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형상 변경이 기능상 또는 제조상 당연히 요구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전체적 판단

위와 같은 차이점들은 결합편부의 외곽선과 상면 구성 및 연결부의 입체 형상에 걸쳐 서로 연계되어 전체적인 심미감을 변화시키므로, 위 차이점들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형상 변경이 작동상 필요에 따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선택·배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변경이 이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앞서 본 차이점들이 서로 연계되어 선행디자인 2와 다른 전체적인 심미감을 형성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 2의 단순한 변경·전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와 동일·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김영기

판사 노지환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압력솥의 뚜껑에 부착되어서 클램프에 연결되어 한 쌍의 링크를 서로 슬라이드 되도록 포개어 고정하여 손잡이에 형성된 캠과 링크의 돌기에 의해 클램프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압력밥솥의 뚜껑을 개폐할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임.

3. 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이 디자인의 정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3은 이 디자인의 배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4는 이 디자인의 좌측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5는 이 디자인의 우측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6은 이 디자인의 윗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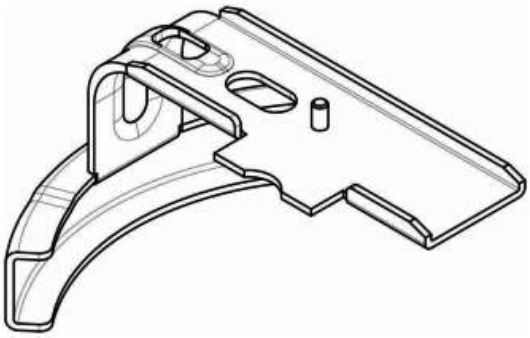
도면 1.7은 이 디자인의 저면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8은 이 디자인의 다른 각도에서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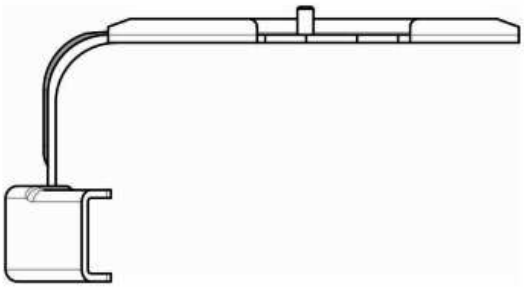
참고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사용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압력솥용 클램프'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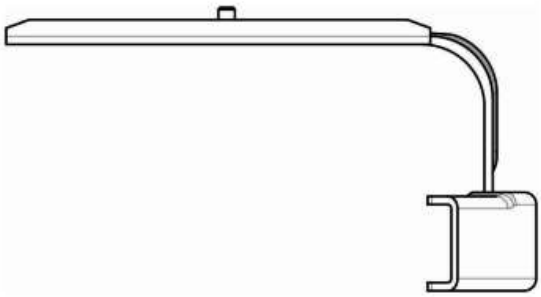
[도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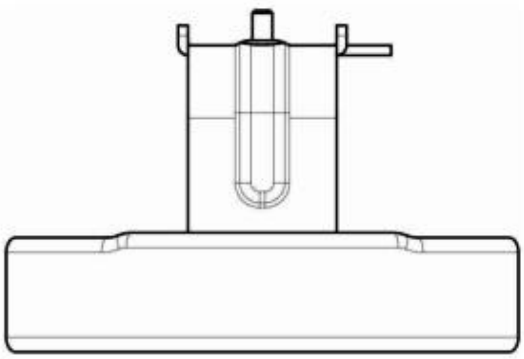
[도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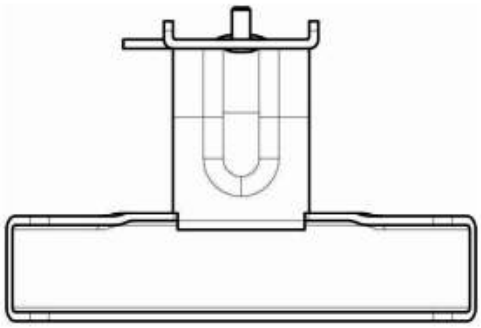
[도면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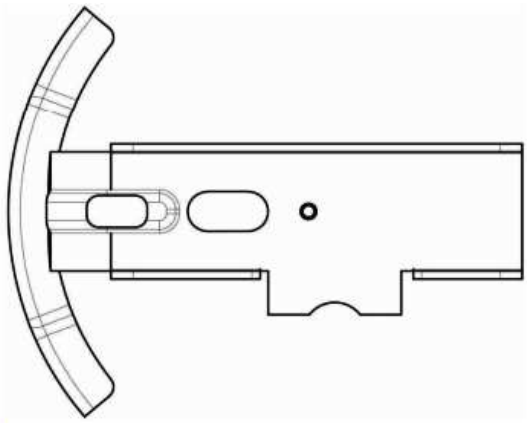
[도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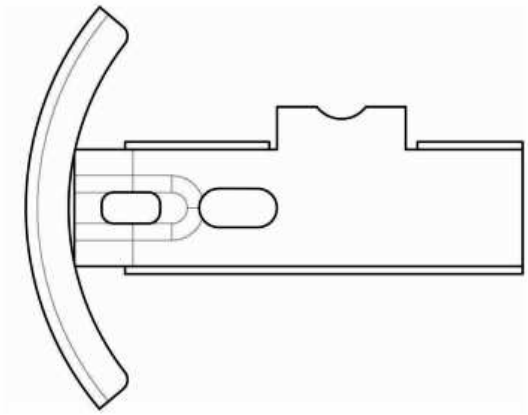
[도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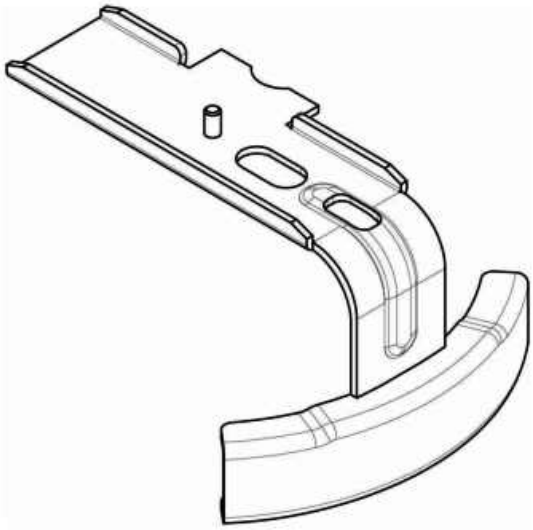
[도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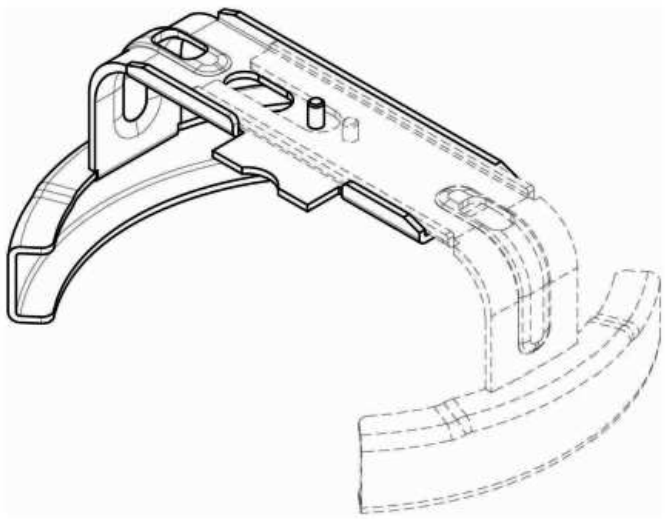
[도면 1.7]



[도면 1.8]



[참고도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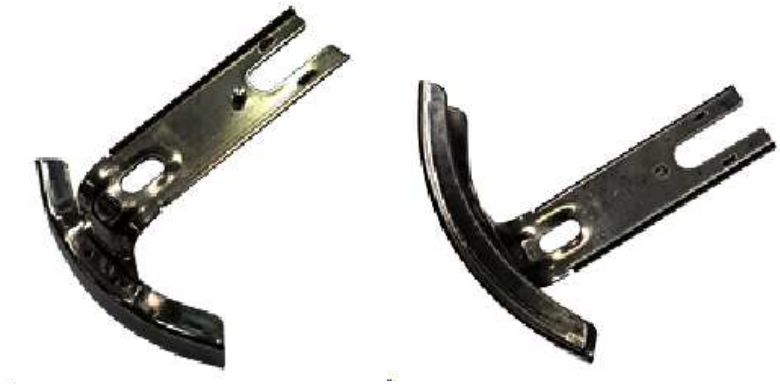
끝.

별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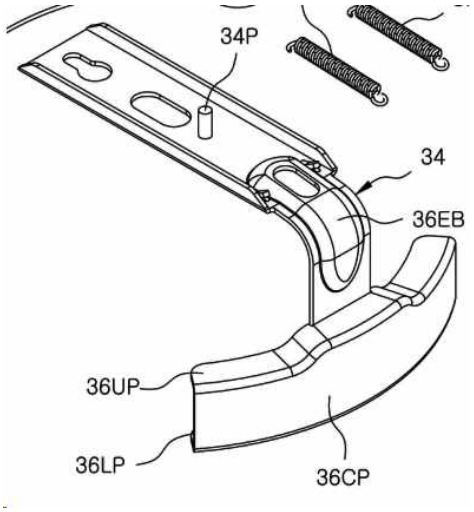
선행디자인들의 주요 내용

1. 선행디자인 1





2. 선행디자인 2



끝.